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발행일 2019. 04. 04.

광역지방정부의
노동행정 현황과 과제

목차

목차	2
요약	3
I . 지방정부 노동행정 개선의 필요성	5
II . 광역지방정부 노동행정 현황 분석	6
1. 광역지방정부 노동행정 현황 분석의 방법	6
2. 광역지방정부의 노동행정 분석	6
1) 노동행정 조례	6
2) 노동행정 예산 및 담당부서	12
3)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14
4) 노동권익기관	16
5) 노동 거버넌스 (노사민정협의회, 노동이사제)	17
III . 결론	20

요약

1. 보고서의 취지

- 한국 사회의 1인당 연평균 노동시간은 2,024시간(2017년 기준 OECD 3위)으로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되어 있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은 40.9%으로 매우 높으며,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59.3%으로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가 매우 큼. 이렇듯 한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장시간·불안정·불평등 등의 특성을 가지며 총체적으로 열악하다고 볼 수 있음.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고용형태가 다양해지고 불안정해지는 등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노동정책이 요구됨.
- 한국 사회의 노동행정은 중앙정부(고용노동부)가 주도하여 기획·집행하는 중앙집중-정부주도적 성격을 지님. 한국 사회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노동행정과 함께, 중앙정부 노동행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역노동행정이 요구됨. 특히 지방정부는 많은 수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로서 모범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도 있음.
- 이와 같이 지방정부 노동행정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일부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춰 주도적인 노동행정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참여연대는 「광역지방정부의 노동행정 방향과 과제」보고서를 통해 전국 광역지방정부 노동행정의 실태를 확인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노동자 권리보호, 노동기본권 보장 기반 구축, 고용의 질 개선, 노동존중문화 확산’과 같은 노동친화적 가치가 지방정부 노동행정에 반영되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광역지방정부의 노동행정 변화 현황

- 광역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장애인 등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조례,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등의 노동행정 조례를 제정하고 노동권익기관으로 노동복지시설을 운영해왔음.
- 광역지방정부의 2019년 세출총액 대비 노동부문 예산은 0.58%(53,575백만 원), 노동담당 행정조직의 비중은 본청 내 전체근무 인원 대비 0.5%(22.6명)에 불과할 정도로 ‘노동행정 예산과 노동담당 행정조직’ 비중은 상당히 낮았음. 이러한 점을 살펴봤을 때 광역지방정부 행정에서의 노동행정 비중은 매우 낮은 실정이라고 할 수 있음.
- 한편 지역 차원의 소득 불평등 해소 정책인 생활임금 조례가 상당수 광역지방정부에 제정(17곳 중 12곳)됐고, 중장기적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례(6곳 제정), 새로운 노동거버넌스인 노동이사제 관련 조례(4곳 제정) 등 지역 주도로 노동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광역지방정부가 증가하는 경향과, 적은 수이지만 서울노동권익센터, 경기도노동권익센터와 같은 종합적인 노동권익기관이 광역지방정부 주도로 설치된 것을 확인하였음. 또한, 2019년 광역지방정부의 세출 예산액 대비 노동부문 예산이 2018년에 비해 21.8%(9,571백만 원)증가하고, 지역 노동 거버넌스인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2019년 예산이 2018년 대비 40.1%(38,697천 원) 증가하였음. 이러한 점은 광역지방정부의 노동행정이 점차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줌.

3. 광역지방정부 노동행정 개선을 위한 제언 : 광역지방정부의 노동행정 비중확대와 거버넌스 변화

- 광역지방정부는 노동문제 해결 주체인 노동조합의 조직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고용·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에 집중된 노동정책 범주를 '노조활권리 지원(노동조합 교육 및 시설 지원, 지역 거버넌스에 노동조직 참여 확대, 종합적인 노동행정 지원시설 설치 등)'으로 확대해야 함. 또한, 제도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 지역 주체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광역지방정부 산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등 노동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이러한 노동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기 위하여 노동행정 예산과 노동담당 행정조직' 비중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광역지역정부는 중앙정부의 노동정책 집행과 함께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춘 노동행정을 기획하고 집행해야 함. 중앙정부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만들고 지역정부는 노동자들의 적정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생활임금을 추진한 것처럼, 중앙정부는 기본적인 노동행정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광역지방정부는 각 지역 상황과 여력에 따라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상회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상호보완적 노동행정이 이뤄질 수 있음.
- '노동자 권익보호, 노동기본권 보장 기반 구축, 고용의 질 개선, 노동존중문화 확산'과 같은 노동친화적 가치가 지방정부 노동행정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접촉면이 넓다고 할 수 있는 광역지방정부 행정에서 노동행정의 비중이 커져야 함. 서울특별시 등 일부 광역지방정부의 모범적인 노동행정 사례를 참고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동조례 제정 및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노동 예산 및 전담부서 확대, △노조활권리 지원 확대, △노동거버넌스 활성화과 같은 지역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노동정책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함.

I. 지방정부 노동행정 개선의 필요성

- 한국 사회의 1인당 연평균 노동시간은 2,024시간(2017년 기준 OECD 3위)으로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되어 있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은 40.9%으로 매우 높으며,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59.3%으로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가 매우 큼.¹ 이렇듯 한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장시간·불안정·불평등 등의 특성을 가지며 총체적으로 열악하다고 볼 수 있음.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고용형태가 다양해지고 불안정해지는 등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노동정책이 요구됨.
- 한국 사회의 노동행정은 중앙정부(고용노동부)가 주도하여 기획·집행하는 중앙집중-정부주도적 성격을 지님. 한국 사회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노동행정과 함께, 중앙정부 노동행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역노동행정이 요구됨. 특히 지방정부는 많은 수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로서 모범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도 있음.
- 선도적인 지방정부 노동행정 사례로 서울특별시를 꼽을 수 있음. 서울시의 경우 2014.3.20.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2015.4.29. 서울시 노동정책기본계획을 발표한 뒤 종합적인 노동행정을 펼치고 있음. 서울시는 노동정책기본계획의 4대 정책과제로 '노동기본권 보장기반 구축, 고용의 질 개선,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제시하고,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사회보험 적용, 마을노무사, 시민명예노동음부즈만 제도 운영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노동행정을 진행해옴.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일부 지방정부에서 생활임금, 청년수당, 노동이사제 등 그동안 중앙정부가 시도하지 못했던 고용·노동정책이 실험되어 왔음.
- 정치권 또한 지방정부 노동행정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지역 노동행정 개선을 위한 공약을 제시한 바 있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발표한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약자료집(<http://bit.ly/2IBAiDe>)'에서 △지자체 단위 '독립된' 노동·일자리 전담부서 설치·운영,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 추진 지속 등 노동정책을 공약하였으며, 문재인 정부 또한 19대 대선 공약집(<http://bit.ly/2MaRIIZ>)에서 <문재인 정부 또한 19대 대선 공약집(<http://bit.ly/2MaRIIZ>)>에서 △지자체 생활임금제 확대와 민간확산, △공공부문 시중노임단가 적용, △공공발주 사업 하도급 임금보장제도(적정임금제) 시행 및 민간확대 등 노동정책을 공약하였음.
- 이와 같이 지방정부 노동행정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일부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춰 주도적인 노동행정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참여연대는 「광역지방정부의 노동행정 방향과 과제」보고서를 통해 전국 광역지방정부 노동행정의 실태를 확인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노동자 권리보호, 노동기본권 보장 기반 구축, 고용의 질 개선, 노동존중문화 확산'과 같은 노동친화적 가치가 지방정부 노동행정에 반영되는 데 기여하고자 함.

¹ 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8.12

II. 광역지방정부 노동행정 현황 분석

1. 광역지방정부 노동행정 현황 분석의 방법

- 광역지방정부의 노동행정 현황을 파악하고자 참여연대는 2019.1.16. 전국 17개 광역지방정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청구하여 2019년 2월 중 관련 자료를 수령함.
 - 노동 관련 조례 현황
 - 지방정부 차원의 ‘노동정책 기본계획’ 현황
 - 2016~2019년도 노동행정 예산·예결안
 - 노동 관련 행정 담당부서 현황
 - 노동자를 위한 권리보호 및 복지 관련한 지원시설 설치·운영 현황
 -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운영 현황, 제도 도입 계획
 -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예산
 - 지방정부 산하 공공기관 내 노동이사제 운영 현황
 - 지방정부 본청과 산하 공공기관 및 출연·출자 기관 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현황
 - 노동정책 관련 거버넌스 현황
-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광역지방정부의 답변 내용을 △노동행정 조례 △노동행정 예산 및 담당부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권익기관 △노동 거버넌스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2. 광역지방정부의 노동행정 분석

1) 노동행정 조례

- 광역지방정부의 노동행정 관련 조례 중 지역 차원의 소득 불평등 해소 정책인 생활임금 조례가 상당수 광역지방정부에 제정(17곳 중 12곳)되었고, 중장기적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례(6곳 제정), 새로운 노동거버넌스인 노동이사제 관련 조례(4곳 제정, <표9 참고>) 등 지역 주도로 노동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광역지방정부가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음.
- 다만, 모든 광역지방정부에 제정되어 있는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노인 일자리 창출 조례’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광역지방정부의 노동 관련 조례의 상당수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제정된 조례인 것으로 나타남.
- 노동정책 기본계획 관련 조례 : 노동정책 기본계획 조례는 지방정부가 지역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노동정책을 세우기 위한 토대가 되는 조례임. 서울특별시가 2014.3.20.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조례’를 제정한 이후 광주광역시(2016.7.1), 경기도(2016.12.16), 충청남도(2017.6.7) 순으로 노동정책 기본계획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민선 7시가 시작된 이후 울산광역시(2018.12.27.)와 제주특별자치도(2018.12.31.)에 노동정책 기본계획 조례가 제정됨(<표 1> 참조). 많은 수는

아니지만 서울특별시를 시작으로 광역지방정부에 노동정책 기본계획 관련 조례가 확산되고 있음.

<표 1> 노동정책 기본계획 관련 조례 (출처 :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한 자료를 가공)

광역 지방정부	조례명	제정날짜
경기도	경기도 근로기본 조례	2016.12.16.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2016.07.0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2014.03.20.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2018.12.2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2018.12.31.
충청남도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7.06.07.

- 생활임금 조례 : 전국 17개 광역지방정부 중 12개 광역지방정부가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나타남(<표 2> 참조). 생활임금제도 조례는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존 최저임금을 보완한 적절한 생활임금을 심의하는 생활임금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생활임금 조례를 도입하지 않은 광역지방정부는 5곳(경상남도,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충청북도, 울산광역시. 2019년 2월 기준)임. 생활임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업체와 위탁·용역계약을 맺을 때 민간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을 계약조건으로 포함시켜, 민간업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제도로서 2012년 참여연대가 제안했고 우리나라 최초로 서울 성북구, 노원구가 시행한 바 있음. 광역지방정부 중 경기도가 2014.7.11. 가장 먼저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였고,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광역지방정부가 2015년 6곳, 2016년 2곳, 2017년 2곳으로 확산되면서 대부분의 광역지방정부에 지역 차원의 소득 불평등 해소 정책인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표 2> 생활임금 관련 조례 (출처 :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한 자료를 가공)

광역 지방정부	조례명	제정날짜
강원도	강원도 생활임금 조례	2015.11.06.
경기도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2014.07.11.
경상남도	없음	-
경상북도	없음	-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2015.07.01.
대구광역시	없음	-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2016.01.01.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2017.02.08.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2015.01.02.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임금 조례	2014.12.22.
울산광역시	없음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2015.11.16.
전라남도	전라남도 생활임금 조례	2015.10.05.
전라북도	전라북도 생활임금 조례	2016.06.1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7.03.08.
충청남도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	2015.12.30.
충청북도	없음	-

- **취약계층 노동자보호 조례** : 취약계층 노동자보호 조례는 비정규직·장애인·청소년 등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등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내용을 담은 조례임. 10개 광역지방정부에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조례가 제정돼 있고, 7개 광역지방정부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관련 조례가 제정돼 있으며, 5개 광역지방정부에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가 제정돼 있음(<표 3> 참조). 또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분 광역지방정부에 장애인 노동자의 보호 근거가 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조례 (출처 :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한 자료를 가공)

광역 지방정부	조례명	제정날짜
강원도	강원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1.09.23.
경기도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2012.04.06.
	경기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2.01.05.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2016.09.29.
	경기도 근로청소년 보호 및 우수업체 선정지원에 관한 조례	2017.03.13.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2016.07.19.
경상남도	경상남도 근로청소년 보호 및 고용 우수업체 장려에 관한 조례	2016.06.09.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3.08.08.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4.10.10.
경상북도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5.12.31.
	경상북도 청년 미취업자 등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2016.09.19.
	경상북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	2016.09.19.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조례	2011.03.02.
	광주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2.11.01.
	광주광역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2015.10.01.
	광주광역시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 조례	2018.04.01.
	광주광역시 감정 노동자 보호 조례	2016.07.01.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2011.05.30.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2011.08.05.
	대전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2014.04.18.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2017.10.18.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2013.04.03.
	부산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7.08.09.
	부산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2018.05.23.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2011.01.13.
	서울특별시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 조례	2015.01.02.
	서울특별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	2016.07.14.
	서울특별시 근로청소년 보호 및 고용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	2016.01.07.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3.04.10.
	세종특별자치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2016.10.31.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6.11.03.
	울산광역시 노인 취업차별금지 조례	2013.10.02.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1.10.24.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4.01.09.
전라남도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0.05.13.
	전라남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2013.07.05.
	전라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8.12.31.
	전라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2018.10.04.
전라북도	전라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3.11.08.
	전라북도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2017.11.1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2011.06.29.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12.03.21.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	2017.08.09.
충청남도	충청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3.07.30.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등에 관한 조례	2015.12.30.
	충청남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전 및 권리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2013.12.30.
충청북도	충청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7.09.29.

- 고용·일자리 관련 조례 : 고용정책 기본법 제9조는 전국지방정부가 지역고용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모든 광역지방정부에 중장기적인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을 세우기 위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표 4> 참조).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2019.1.30.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또한, 「노인복지법」제23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모든 광역지방정부에 노인 일자리 창출 조례가 제정돼 있음.

<표 4> 고용·일자리 관련 조례 (출처 :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한 자료를 가공)

광역 지방정부	조례명	제정 날짜
강원도	강원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2015.10.08.
	강원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2015.12.31.
	강원도 일자리 정책 수립 및 지원 조례	2017.12.29.
	강원도 일자리 공제조합 설립 및 지원 조례	2018.04.06.
	강원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2018.11.09.
경기도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2008.12.12.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2012.11.06.
	경기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2016.03.22.
	경기도 중장년 일자리지원에 관한 조례	2018.03.20.
	경기도 사회적일자리 조례	2015.08.03.
경상남도	경상남도 노인일자리창출 지원 조례	2009.03.26.
	경상남도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2018.12.13.
경상북도	경상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2010.02.25.
	경상북도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	2012.04.09.
	경상북도 좋은 일자리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8.11.01.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2011.09.15.

	광주광역시 광주형일자리 촉진에 관한 조례	2018.05.01.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2009.11.10.
	대구광역시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2010.07.30.
	대구광역시 청년 취업지원 등 일자리창출 지원조례	2015.12.30.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조례	2015.04.17.
	대전광역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	2017.10.18.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2009.09.16.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2019.02.06.
	부산광역시 일자리창출 지원조례	2013.05.22.
	부산광역시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조례	2018.02.07.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2017.03.22.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 · 지원에 관한 조례	2016.03.24.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	2015.10.08.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2013.11.20.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2016.12.20.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	2014.12.22.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2014.12.22.
	세종특별자치시 일자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018.08.20.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2018.08.20.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2013.10.02.
	울산광역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2016.12.29.
	울산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2017.11.02.
	울산광역시 창업지원협의회 조례	2017.09.30.
	울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2012.05.24.
	울산광역시 노인 취업차별금지 조례	2013.10.02.
	울산광역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2015.02.02.
	울산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2018.07.12.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2015.04.13.
	인천광역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8.10.08.
전라남도	전라남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2010.01.08.
	전라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2012.07.05.
	전라남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2015.01.02.

	전라남도 청년구직지원 조례	2018.10.04.
전라북도	전라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2010.01.29.
	전라북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2015.10.12.
	전라북도 여성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2011.07.01.
	전라북도 청년일자리 창출촉진에 관한 조례	2013.10.0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2015.08.18.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2016.01.11.
충청남도	충청남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2009.10.30.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2015.12.30.
충청북도	충청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2011.06.10.
	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	2014.10.17.

2) 노동행정 예산 및 담당부서

- 2019년 노동부문 예산 비중이 높은 광역지방정부는 강원도(1.68%), 광주광역시(0.81%), 대구광역시(0.77%)이었고, 노동부문 예산 절대액이 가장 많은 광역지방정부는 서울특별시(2263억 원)인 것으로 나타남(<표 5> 참조). 반면, 노동부문 예산 비중이 낮은 광역지방정부는 경기도(0.25%), 인천광역시(0.40%), 전라북도(0.42%), 대전광역시(0.43%), 부산광역시(0.43%) 순이었음. 광역지방정부의 노동행정은 세출총액 대비 노동부문 예산이 평균 0.58%에 불과할 정도로 낮았음. 다만, 광역지방정부의 노동부문 평균 예산은 2018년 평균 44,004백만 원에서 2019년 53,575백만 원으로 21.8%(9,571백만 원) 증가하면서, 세출 예산액 대비 노동부문 예산도 평균 0.53%에서 0.58%으로 소폭 증가하였음.

<표 5> 광역지방정부 2018년 노동행정 예산 (출처 : 각 광역정부 홈페이지 세출 예산서) (단위 : 백만 원, %)²

광역 지방 정부	2018년			2019년			2018-2019 노동 예산 증가액
	전체예산 (세출총액) (a)	노동부문 예산(b)	비율 (b/a)	전체예산 (세출총액) (c)	노동부문 예산(d)	비율 (d/c)	
강원	4,727,826	64,210	1.36	5,229,691	87,977	1.68	23,767

² '노동행정 예산'은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2019)」상 노동부문 업무로 다음 항목에 해당함. △근로조건의 기준,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 보건, 근로자의 복지후생, 고용정책 및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기타 노동에 관한 업무 △근로자지원등 노정관리 △실업대책, 고용촉진, 공공근로사업등 △노동행정, 지방노동관서 운영, 노동위원회 △고용안정, 고용안정융자지원, 고용알선, 고용환경개선 △능력개발, 능력개발융자지원, 직업능력개발 △고용보험지원·반환, 고용보험 연구개발, 직업재활지원 △장애인근로자 융자, 장애인시설 설치비용 융자 △기능경기대회 지원, 고용정보 관리, 직업훈련 지원 △산재보험 및 산재예방 관련 업무, 생활안정대부사업 △근로자복지지원, 근로자휴양시설지원, 실직자점포융자 △기타 고용정책 수립 및 시행 업무 △공무원노조관련 업무

경기	21,682,331	72,406	0.33	24,019,711	59,864	0.25	-12,542
경남	7,279,761	26,787	0.37	8,256,678	55,494	0.67	28,707
경북	7,803,593	42,767	0.55	8,645,620	57,455	0.66	14,688
광주	4,513,862	38,526	0.85	5,083,001	41,339	0.81	2,813
대구	7,727,440	45,251	0.59	8,331,570	64,201	0.77	18,950
대전	4,014,105	14,570	0.36	4,445,802	18,912	0.43	4,342
부산	10,792,663	41,884	0.39	11,666,119	49,791	0.43	7,907
서울	31,814,065	213,283	0.67	35,741,608	226,317	0.63	13,034
세종	1,305,509	6,283	0.48	1,551,612	11,750	0.76	5,467
울산	3,426,875	21,114	0.62	3,600,332	16,093	0.45	-5,021
인천	8,933,618	35,037	0.39	10,110,471	40,214	0.40	5,177
전남	6,750,824	-	-	7,369,128	-	-	-
전북	5,620,721	15,737	0.28	6,224,149	26,106	0.42	10,369
제주	5,029,742	30,200	0.60	5,285,111	42,049	0.80	11,849
충남	5,173,500	9,860	0.19	5,740,000	28,776	0.50	18,916
충북	4,180,990	26,155	0.63	4,578,890	30,868	0.67	4,713
평균	8,281,025	44,004	0.53	9,169,382	53,575	0.58	9,571

- 광역지방정부의 노동 관련 행정조직 근무 인원은 평균 22.6명이었으며, 고용·일자리 업무를 제외한 노동행정 전담 인원은 7.8명인 것으로 나타남(<표 6> 참조). 또한,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 등 노동정책 기본계획이 제정돼 있는 광역지방정부의 노동 관련 행정 조직 근무인원은 평균 33.7명(고용·일자리 업무를 제외한 노동행정 전담 인원 12.5명)으로 다른 광역지방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음. 하지만, 광역지방정부 전체근무 인원 대비 노동행정 담당 근무 인원은 평균 0.5%(고용·일자리 사업 제외한 노동 전담 인원 : 0.2%)로 광역지방정부에서 노동담당 행정조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적음을 확인할 수 있음.

<표 6> 광역지방정부 노동 관련 행정 조직 (출처 :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한 자료를 가공, 단위 : 명)

광역지방정부	노동 관련 행정 조직	본청 내 전체 근무 인원	노동 관련 행정조직 근무 총인원	(고용·일자리 제외) 노동 전담 인원
강원도	경제진흥과 내 노사협력팀, 일자리과	5,353	22	3
경기도	노동정책과, 일자리정책과	3,889	37	20
경상남도	노동정책과, 일자리정책과	-	32	11
경상북도	중소벤처기업과	6,519	4	4
광주광역시	노동협력관, 일자리정책관	2,280	29	10

대구광역시	일자리노동정책과	5,703	25	5
대전광역시	일자리정책과	2,115	25	12
부산광역시	인권노동정책팀	2,899	4	4
서울특별시	노동정책담당관	10,204	49	24
세종특별자치시	일자리정책과	2,637	23	3
울산광역시	일자리노동과	1,857	27	7
인천광역시	노사협력팀	6,362	4	4
전라남도	중소벤처기업, 일자리정책과	-	20	4
전라북도	기업지원과 노사협력팀	-	4	4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노동정책팀	5,835	28	3
충청남도	일자리정책과, 노동정책과	4,314	32	11
충청북도	충청북도 일자리기업과 노사협력팀, 충청북도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1,286	20	3
평균		4,375	22.6	7.8

- 광역지방정부의 2019년 노동행정 예산은 2018년에 비해 소폭 증가했지만, 광역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노동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에 '노동행정 예산과 노동담당 행정조직' 비중은 상당히 낮다고 판단됨.

3)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 고용노동부가 2017.7.20.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광역지방정부 본청에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2017.10)」에 따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는 41.6만 명(기간제 24.6만 명, 파견·용역 17.0만 명)임. 고용노동부는 2017.7.20.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서 2020년까지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및 파견·용역 노동자 20.5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2018년 3월말 기준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10.1만 명(40.3%)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다고 밝혔음(<http://bit.ly/2QwLAWz>). 현재 광역지방정부 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계획에 따라 1단계(본청), 2단계(광역지방정부 산하 공공기관 및 출연 출자 기관)으로 구분되어 진행되고 있음.
- 전국 광역지방정부 본청(1단계) 내 비정규직 노동자 13,831명 중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노동자는 6,635명이며, 이 중 5,084명의 정규직 전환이 완료되어 '정규직 전환 결정 대비 전환 완료 비율'은 76.6%로 나타남. 대부분 광역지방정부에서 90% 이상의 전환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전환률이 낮은 광역지방정부는 인천광역시(18.5%), 울산광역시(34.9%), 부산광역시(42.3%) 순으로 확인됨(<표 7> 참조).

- 전국 광역지방정부 산하 공공기관 및 출연 출자 기관(2단계) 내 비정규직 노동자 14,701명 중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노동자는 5,636명이며, 이 중 4,448명의 정규직 전환이 완료되어 ‘정규직 전환 결정 대비 전환 완료 비율’은 78.9%로 나타남. 전환율이 낮은 광역지방정부는 경기도(21.4%), 울산광역시(72.7%), 대전광역시(76.1%) 순으로 확인됨.
- 일부 광역지방정부의 정규직 전환 집행률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해당 광역지방정부가 정규직 전환율을 적극 제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번 보고서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정규직 전환을 원청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를 설립하여 전환하는 문제, 정규직으로 전환됐으나 처우는 개선되지 않는 문제 등 정규직 전환의 한계가 지적되는 상황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정부는 해당 문제들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

<표 7> 광역지방정부 본청의 비정규직(기간제 및 파견·용역 노동자) 정규직 전환 현황 (출처 :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한 자료를 가공, 단위 : 명, %)

광역지방정부	1단계 (본청)				2단계 (산하 공공기관 및 출연 출자 기관)			
	총인원	전환 결정 인원(a)	전환 완료 인원(b)	전환률 (a/b)	총인원	전환 결정 인원(c)	전환 완료 인원(d)	전환률 (c/d)
강원	658	205	202	98.5	414	179	179	100
경기	1064	577	577	100	1946	1096	234	21.4
경남	581	255	255	100	229	57	57	100
경북	831	258	237	91.9	282	172	172	100
광주	370	370	370	100	491	491	491	100
대구	914	494	258	52.2	1716	1026	1011	98.5
대전	675	343	343	100	708	549	418	76.1
부산	1291	1043	441	42.3	3870	584	584	100
서울	1613	413	413	100	1815	379	343	90.5
세종	453	185	185	100	172	126	118	93.7
울산	312	109	38	34.9	554	132	96	72.7
인천	836	480	89	18.5	1388	279	279	100
전남	433	350	230	65.7	-	-	-	
전북	461	207	129	62.3	490	299	233	77.9
제주	2214	897	869	96.9	116	46	40	87
충남	581	255	255	100	229	57	57	100
충북	544	194	193	99.5	281	164	136	82.9
합계	13,831	6,635	5,084	76.6	14,701	5,636	4,448	78.9

4) 노동권익기관

- 모든 광역지방정부는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취약계층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복지시설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남. 「근로복지기본법」제3조 1항은 노동복지정책은 노동자의 경제·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노동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의하며, 광역지방정부는 같은 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노동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노동복지시설은 비정규직 노동자, 장애인 노동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하여 교육, 문화, 상담 등 복지서비스 제공하는 기관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 비정규센터 등의 시설이 포함됨(<표 8> 참조).
- 노동자 법률지원·노사관계 컨설팅·정책개발 조사연구 등 종합적인 노동권익기관은 '광주광역시노동센터', '서울노동권익센터',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정도로 일부 광역지방정부에서만 확인됨. 해당 노동권익기관은 노동복지시설과 일부 겹치는 내용도 있지만, 광역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만든 노동권익기관인 서울노동권익센터의 경우 서울지역 노동자(가사노동자·택배기사·아르바이트 노동자 등)의 노동실태와 지원방안 연구자료를 발간하는 등 지역 노동행정 정책 연구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음.

<표 8> 노동권익기관 현황 (출처 :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한 자료를 가공)

광역 지방정부	노동권익기관
강원도	근로자종합복지관, 노동법률상담소
경기도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경기도노동권익센터
경상남도	노동복지회관, 비정규직근로자 상담센터
경상북도	근로자복지시설, 노동법률상담소
광주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비정규직지원센터, 청소년노동인권센터, 광주광역시노동센터
대구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노동복지회관
대전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부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노동복지회관, 노동상담소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관, 서울특별시 강북근로자복지관,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서울시 감정보호센터, 노동복지센터, 서울노동권익센터
세종특별자치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노동복지센터, 노동상담소
인천광역시	남부근로자종합복지관, 북부근로자종합복지관,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근로자문화센터
전라남도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전라남도 비정규직 노동센터
전라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충청남도	충청남도근로자복지회관, 충남광역외국인 근로자쉼터, 노동상담소

5) 노동 거버넌스 (노사민정협의회, 노동이사제)

- 2018년 대비 2019년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예산이 40.1% 증가(평균 38,697천 원)하였고,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광역지방정부가 확산되고 있는 흐름을 살펴 봤을 때, 지역 차원의 노동 거버넌스가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모든 광역지방정부가 사회적 대화 기구인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조례를 제정하였음(<표 9> 참조). 노사민정협의회 조례는 지역 노사·주민·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 지역 노사관계 안정, 지역경제 발전 관련 의제를 심의하는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지방정부의 '노동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정부(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 및 국가의 노사민정 지원 의무가 규정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역노사민정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담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광역지방정부에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임.

<표 9> 노동 거버넌스 관련 조례 (출처 :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한 자료를 가공)

광역 지방정부	조례명	제정날짜
강원도	강원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2011.12.30.
경기도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999.12.31.
	경기도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2016.12.16.
경상남도	경상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04.03.11.
경상북도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04.04.01.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10.11.15.
	광주광역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15.12.28.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2010.12.20.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2015.08.14.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2001.02.15.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2011.07.28.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조례	2012.09.30.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제사회노동 화백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2018.12.27.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00.06.26.
전라남도	전라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17.06.20.
전라북도	전라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2015.05.01.

	전라북도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2015.10.12.
	전라북도 노사화합 촉진 조례	2017.02.0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2011.01.18.
충청남도	충청남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2010.12.30.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사무국 운영규정	2016.03.10.
충청북도	충청북도노사민정협의회 조례	2010.10.20.

- 2019년 지방정부의 노사민정협의회 평균 예산은 135,173천 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8년 노사민정협의회 평균 예산 96,476천 원에 비해 40.1%(38,697천 원) 증가한 것임(<표 10> 참조). 2019년 노사민정협의회 협의회 예산이 가장 많은 지방정부는 충청남도(370,000천 원), 광주광역시(280,000천 원), 서울특별시(233,000천 원) 순으로 확인되었으며, 예산이 가장 적은 광역지방정부는 강원도(8,000천 원), 세종특별자치시(9,000천 원), 울산광역시(15,000천 원) 순으로 확인되었음.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관련한 내용은 양적 검토로서 질적 검토가 아니므로 예산액의 대소로 협의회가 잘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할 수 없음은 본 보고서의 한계임을 밝혀둠.

<표 10>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예산 (출처 :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한 자료를 가공, 단위 : 천 원)

광역지방정부	2018 노사민정협의회 예산	2019 노사민정협의회 예산	증감액
강원도	6,216	8,000	1,784
경기도	36,480	33,500	-2,980
경상남도	91,800	160,000	68,200
경상북도	40,000	120,000	80,000
광주광역시	145,600	280,000	134,400
대구광역시	117,000	160,000	43,000
대전광역시	160,000	70,000	-90,000
부산광역시	43,000	200,000	157,000
서울특별시	111,000	233,000	122,000
세종특별자치시	11,500	9,000	-2,500
울산광역시	9,700	15,000	5,300
인천광역시	150,000	205,000	55,000
전라남도	72,000	72,000	0
전라북도	49,000	49,000	0

제주특별자치도	107,502	160,000	52,498
충청남도	350,000	370,000	20,000
충청북도	139,300	153,450	14,150
평균	96,476	135,173	38,697

-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외 노동 거버넌스 행정으로 노동이사제가 있음. 노동이사제는 사업장 이사회에 노동조합 대표가 참여하는 노동 거버넌스 제도로서 노사 간 협력 및 경영의 투명성·공익성 제고, 사업장 내 민주주의 실현의 수단이라는 의미가 있음. 4개 광역지방정부(경기도,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지방정부 산하 공사·공단·출연기관에 노동이사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노동이사제 조례가 제정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표 11> 참조). 노동이사제 조례는 2016년 서울특별시에 처음 제정되었으며, 최근 2년 동안 광주광역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순서로 노동이사제 조례가 제정되었음.
- 하지만, 실제로 노동이사제를 운영하고 있는 광역지방정부는 서울특별시(16개소 도입), 인천광역시(1개소 도입) 두 곳임(<표 12> 참조). 경기도는 산하 공기업 및 정원 100인 이상 출자출연기관 11개소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준비 중이라고 밝힘. 노동이사제 조례의 50%(2곳)가 2018년 말에 도입되었고 경상남도의회에 노동이사제 조례가 최근 제출되는 등 지방정부 주도의 노사 거버넌스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표 11> 노동이사제 관련 조례 (출처 :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한 자료를 가공)

광역 지방정부	조례명	제정날짜
경기도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2018.11.13.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노동자이사제 운영 조례	2017.11.15.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2016.09.29.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2018.12.10.

<표 12> 산하 공공기관 내 노동이사제 도입 현황 (출처 :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한 자료를 가공)

광역 지방정부	산하 공공기관 내 노동이사제 도입 현황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여성가족재단, 서울복지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디자인재단, 시립교향악단, 120다산콜재단 (16개소)
인천광역시	인천도시공사 (1개소)

III. 결론

- 광역지방정부의 노동행정 변화 현황

- 광역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장애인 등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조례,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등의 노동행정 조례를 제정하고 노동권익기관으로 노동복지시설을 운영해왔음.
- 광역지방정부의 2019년 세출총액 대비 노동부문 예산은 0.58%(53,575백만 원), 노동담당 행정조직의 비중은 본청 내 전체근무 인원 대비 0.5%(22.6명)에 불과할 정도로 ‘노동행정 예산과 노동담당 행정조직’ 비중은 상당히 낮았음. 이러한 점을 살펴봤을 때 광역지방정부 행정에서의 노동행정 비중은 매우 낮은 실정이라고 할 수 있음.
- 한편 지역 차원의 소득 불평등 해소 정책인 생활임금 조례가 상당수 광역지방정부에 제정(17곳 중 12곳)됐고, 중장기적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례(6곳 제정), 새로운 노동거버넌스인 노동이사제 관련 조례(4곳 제정) 등 지역 주도로 노동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광역지방정부가 증가하는 경향과, 적은 수이지만 서울노동권익센터, 경기도노동권익센터와 같은 종합적인 노동권익기관이 광역지방정부 주도로 설치된 것을 확인하였음. 또한, 2019년 광역지방정부의 세출 예산액 대비 노동부문 예산이 2018년에 비해 21.8%(9,571백만 원)증가하고, 지역 노동 거버넌스인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2019년 예산이 2018년 대비 40.1%(38,697천 원) 증가하였음. 이러한 점은 광역지방정부의 노동행정이 점차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줌.

- 광역지방정부 노동행정 개선을 위한 제언 : 광역지방정부의 노동행정 비중확대와 거버넌스 변화

- 광역지방정부는 노동문제 해결 주체인 노동조합의 조직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고용·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에 집중된 노동정책 범주를 ‘노조할권리 지원(노동조합 교육 및 시설 지원, 지역 거버넌스에 노동조직 참여 확대, 종합적인 노동권익기관 설치 등)’으로 확대해야 함. 또한, 제도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 지역 주체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광역지방정부 산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등 노동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이러한 노동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기 위하여 노동행정 예산과 노동담당 행정조직’ 비중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광역지역정부는 중앙정부의 노동정책 집행과 함께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춘 노동행정을 기획하고 집행해야 함. 중앙정부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만들고 지역정부는 노동자들의 적정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생활임금을 추진한 것처럼, 중앙정부는 기본적인 노동행정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광역지방정부는 각 지역 상황과 여력에 따라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상회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상호보완적 노동행정이 이뤄질 수 있음.

- ‘노동자 권리보호, 노동기본권 보장 기반 구축, 고용의 질 개선, 노동존중문화 확산’과 같은 노동친화적 가치가 지방정부 노동행정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접촉면이 넓다고 할 수 있는 광역지방정부 행정에서 노동행정의 비중이 커져야 함. 서울특별시 등 일부 광역지방정부의 모범적인 노동행정 사례를 참고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동조례 제정 및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노동 예산 및 전담부서 확대, △노조할 권리 지원 확대, △노동거버넌스 활성화과 같은 지역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노동정책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함.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광역지방정부의 노동행정 방향과 과제

발행일 2019. 04. 04.

발행처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 : 임상훈 교수)
담당 이조은 간사 02-723-5036 labor@pspd.org

※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보조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대표전화 02-723-5300 회원가입 02-723-4251

주소 03036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통인동)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참여연대 커뮤니케이션 채널 안내(SNS·뉴스레터·보도자료 수신 등)